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여가부의 역할

여성들이 죽어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말인가?

발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방향**
박인숙 (민변 여성위)

토론 **여가부폐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과
국회/정부의 역할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이한빛(YWCA 성평등운동 간사)

공공기관 등 직장 내 성폭력과 여성 노동권 실태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

1인 여성 노동자의 안전권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 분회장)

대학 내 성폭력 및 강간문화 실태고발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

통역 **문자통역 지원**

중계 **LIVE 온라인 생중계** YWCA 유튜브, 진보당

문의 **메일** JointAct.For.GenderEquality@gmail.com

2022. 10. 19. (수)

오후 2시

YWCA A스페이스

서울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4층)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후원

신한은행 140-012-70884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토론회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처벌법과 여가부의 역할**

2022년 10월 19일(수) 14:00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목 차

보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활동경과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3

발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방향 | 박인숙 (민변 여성위)5

토론

여가부폐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과 국회·정부의 역할 요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이한빛 (YWCA 성평등운동 간사)20

공공기관 등 직장 내 성폭력과 여성 노동권 실태 |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25

1인 여성 노동자의 안전권 |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 분회장)32

대학 내 성폭력 및 강간문화 실태고발
|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34

요구안 전달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38

보 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활동 경과

- 22년 4월 14일 윤석열당선인 인수위 앞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
- 목 적 :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과 성평등 추진체계 퇴행을 막아낸다.

- 연대체의 성격
 - ‘여성가족부폐지저지’ 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천을 함께 하는 한시적 연대체
 - 목적 사안과 관련하여 입장이나 기자회견 등 빠르게 대응하는 기구
 - 참여 단체들의 입장과 실천을 공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소통하며 모색

- 활동 경과
 - 22/4/14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윤석열당선인 인수위 앞
 - 22/04/15~5/9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진행 / 윤석열당선인 인수위 앞
 - 22/5/3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해시태그 총 집중 / 1차 SNS 총집중
 - 22/0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 / 대통령취임식장인 국회앞
 - 22/05/15 [여가부폐지를 폐지하라] 오마이뉴스 릴레이 기고
 릴레이기고 링크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general_list.aspx?SRS_CD=0000015098
 릴레이 기고는 참여단체 아닌 곳까지 확장하여 각계각층의 여가부폐지 반대의 이유와 성평등추진체계의 강화를 요구 하는 내용 담김. (14개 릴레이기고).
 - 22/5/10 (화-화)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해시태그 총 집중 / 2차 SNS 총집중
 - 22/8/17 [논평]윤석열 취임 100일 연설문, 여전히 성평등정책은 없다! 여성도, 여가부 폐지도 언급하지 않는 윤정부
 - 22/9/17 [추모집회] 신당역 여성살해 긴급 추모집회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신당역 10번출구 앞 - 불꽃 페미액션 외 공동행동 소속단위 공동 주최, 참여
 - 22/9/19 [기자회견]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범죄 아니다? 여성혐오지우는 김현숙여가부장관 사퇴하라” / 정부종합청사 앞 - 공동행동 소속 5개단체 주최, 참여
 - 22/10/4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로 국면 전환 피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 22/10/11 윤석열정부 여가부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 / 20대 대통령집무실 앞
 - 22/10/15 [전국집중집회] 여성가족부폐지안 규탄 전국집중집회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 우리가 막는다!”

공동주최 /종각역 2번 출구

- 22/10/19 [토론회] “여성들이 죽어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말인가” - 신당역 스토킹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 현재 12차까지 연대체 회의 진행.

발 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방향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변호사)

1.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및 특성

가. 스토킹 범죄 발생 현황

1) 여성 피해자의 스토킹범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국내외의 조사에서 스토킹 경험률은 상당한 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조사에서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에 비하여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최근 경찰 통계에서도 피해자의 79.5%가 여성인 것으로 보고되었다.²⁾

국가	조사명	여성 경험률	남성 경험률
호주	개인 안전 조사(Personal Safety Survey, PSS); 15세 이후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16.8%	6.5%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범죄피해 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 16세 이후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19.9%	9.6%
미국	전국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성폭력 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평생 한 번이라도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31.2%	16.1%
일본	남녀간 폭력 조사; 평생 한 번이라도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10.7%	4.0%

1) 김정혜(2022), “스토킹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인권 통권 제27호, 「스토킹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13~14쪽

2) 전지혜(2022),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수사현장에 미친 영향과 피해자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성과와 과제」, 56~57쪽

한국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평생 한 번이라도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여부	6.1%	3.1%
한국	2000년 박천현, 이상용, 진수명의 연구; 평생 한 번이라도 스토킹 가해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	7.1%	10.3%
	상동; 평생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	20.9%	10.5%
한국	2002년 이진호, 김은경, 황지태의 연구; 평생 동안 지속적인 추적행위나 집요한 추근거림, 원치 않는 접촉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	22.9%(대학생) 31.9%(연예인)	7.6%(대학생) 20.0%(연예인)

2)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국내외의 조사에 따르면 스토킹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국가	조사명	여성 경험률	남성 경험률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범죄피해 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 16세 이후 스토킹 경험자 중 가해자가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인 경우	42.5%	29.4%
미국	2011 전국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성폭력 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현재 또는 과거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60.8%	43.5%
한국	2002년 이진호, 김은경, 황지태의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 또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인 비율	61.5%	
한국	2021년 이수정, 강지은, 김성현의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37.5%(애인) 11.7%(모르는 사람)	
한국	2020년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상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30.6%(연인) 15.2%(모르는 사람)	
한국	경찰통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 관계	34.3%(연인) 18%(지인)	

3) 김정혜(2022), “스토킹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인권 통권 제27호, 「스토킹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13~14쪽

		5.7%(이웃)
--	--	----------

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비율이 높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29%로 보고되었다.⁴⁾

나. 스토킹범죄에 수반되는 범죄유형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판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스토킹행위는 형법 및 특별법상의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로 명예훼손, 재물손괴, 협박, 주거(건조물, 방실)침입, 퇴거불응, 폭행, 상해, 강제추행, 강간, 감금, 카메라등 이용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보복협박, 개인위치정보 수집, 공용물건손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범죄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번호	스토킹처벌법	형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08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4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026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6098, 2022고단1020(병합)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5조의2(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546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47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22조(방실침입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339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296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79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4) 전지혜(2022),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수사현장에 미친 영향과 피해자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56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22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66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36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83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3721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22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07조 제1항(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2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전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069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8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22조(주거침입 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1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79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42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5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66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59	제18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6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2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4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681, 2022고합201(병합)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9 제2항(보복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보복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폭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 18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 제4호(개인 위치정보 수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 49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 220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90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 2475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 225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단 171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합 49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감금치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 143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 1269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보복협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 439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19, 226(병합)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합1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76조(감금)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흥기 등 휴대 강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3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 25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고단 23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1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78조(위험한 물건 휴대 금지)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253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730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 220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 499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고단 48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22조(주거침입 미수)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78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 385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 394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 170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19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1822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02, 2022고단347(병합), 2022고단384(병합)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76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1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형법 제322조(주거침입 미수)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23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16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24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36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고단2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370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단45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45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175조(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283조(협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6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인천지방법원 2022노132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137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4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972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423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820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무허가도검 소지)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158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71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 2564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 285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 819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2. 스토킹범죄 정의규정과 법체계

가. 스토킹범죄의 정의규정

2021. 10. 21.부터 시행된 현행 스토킹처벌법(법률 제18083호)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열거’ 하고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향,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감시, 추적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접근과 감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의

5) 스마트워치

정의는 처벌 요건을 정한다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협소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공개 게시판이나 SNS등에 게시물 게시하는 행위,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인을 사칭하는 행위, 해킹을 시도하거나 해킹하는 행위, 온라인에서의 감시, 피해자 명의의 보험, 예금상품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가족이나 동거인이 아닌 지인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해자의 반려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구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은 위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⁶⁾

나. 해외 입법례

아래 표⁷⁾와 같이, 미국, 영국, 캐나다는 ‘열거식’으로 스토킹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스토킹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우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비하여 그 범위가 넓다.

국가	법령	내용
미국	캘리포니아 주 형법 제 646.9조	의도적·악의적·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 다니거나 괴롭히는 것,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의도로 행동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보며,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것 역시 스토킹으로 포함하고 있음
	형법 제110A장 제2261A조 내지 2266조(주 경계를 넘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혹은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 반려동물이나 장애 보조 동물 등을 살해, 상해 또는 괴롭히거나 감시하려는 의도로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힐 위험 행동이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우편이나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함.
		미국 모든 주에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반복된 일련의 행위’와 ‘현실적 두려움’이다. 법률에서 특정한 행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두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다.
영국	괴롭힘방지법 제2A조 제3항	타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 스토킹 대상자와 관련된 문서나 성명서 등을 발행하는 것, 스토킹 대상의 인터넷, 이메일, 혹은 다른 전자통신 기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것, 근처를 배회하는 것, 스토킹 대상의 재산이나 소유물에 관여하는 것, 바라보거나 감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봄.
	괴롭힘방지법 제4A조	최소 2번 이상 폭력을 사용해 공포를 유발하거나, 심각한 공포 혹은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함.
캐나다	형법 제264조 범죄성괴롭힘	타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타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 거주지, 근무지, 사업장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는 행위, 타인 혹은 그 사람의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함.

6) 김정혜(2022), “스토킹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인권 통권 제27호, 「스토킹 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11~12쪽

7) 위 자료 39~47쪽

독일	형법 제238조 제1항	<p>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행해, ‘타인의 생활방식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각 항목으로 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공간에 접근하는 행위 - 전자 통신 수단 또는 그 밖의 연락 수단, 타인을 통해 연락하려는 행위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 제3자가 그 사람과 접촉하게 하는 행위 - 그 사람 본인이나 그의 친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건강 및 자유를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모욕하거나 여론에서 비방하는 내용의 콘텐츠 배포
----	--------------	--

다. 참고할 현행법령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규정과 달리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는 아동학대 중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다. 우선, 가.목부터 카.목까지는 형법상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고, 타.목은 형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3호는 제외)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위반은 형법에서 본래 정하는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형법 이외의 아동학대범죄행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p>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p> <p>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p> <p>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p> <p>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p> <p>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사)의 죄</p> <p>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p>
--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7조 규정은 다음과 같이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에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행위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는 아동학대살해·치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5조는 아동학대중상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6조는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정의규정 개정방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든 스토킹행위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스토킹 행위’의 정의 규정 자체를 열거 규정에서 열린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행위)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일련의 행위”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⁸⁾ 스토킹행위 정의 규정을 열린 규정으로 두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범위가 넓어져 보다 실효성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처벌규정을 열린규정으로 두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내지 명확성의 원칙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아동복지법 모델을 차용하여 ‘스토킹행위’ 규정을 열린 규정으로 두고, 스토킹범죄 정의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두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열거 규정 추가할 수 있다.⁹⁾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바.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감시 또는 추적하거나 감시 또는 추적당하고 있다고 상대방이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아.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자.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 영상, 그림,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차. 반려동물 등 상대방이 돌보는 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동물학대 행위

아동복지법의 모델을 취할 경우 스토킹행위에 수반되는 위치정보 수집, 불법촬영, 강간,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 범죄(특히 상상적 경합에 있지 않은 범죄의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포섭시켜, 피해자가 스토킹의 일환으로 당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결과적 가중범이나 상습범 규정을 두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범행에 부합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 입법예고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입법예고안은 제2조에서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공백을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의 정의규정을 열린 규정으로 개정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을 구분하여 입법의 공백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김정혜(2022),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 및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당역 사건을 통해 본 스토킹 방지 법·정책의 공백과 개선과제」, 6쪽.

9) 상동

3.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중 29%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스토킹범죄가 친밀한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법원이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로 참작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는 사례도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의사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스토킹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중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여부 및 그 수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

4. 응급조치, 잠정조치 보완

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있는 경우 취해지는 것이지만 잠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가 있어야 한다. 잠정조치위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으나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만 있는데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4항은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반의사불벌죄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불기소나 불송치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잠정조치를 같은 법 제9조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 또는 요구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범위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피해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영국의 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talking Protection Order(2019)

1. Applications for orders

(2) A stalking protection order is an order which,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defendant from carrying out acts associated with stalking -

- (a) prohibits the defendant from doing anything described in the order, or
- (b) requires the defendant to do anything described in the order.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5항은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잠정조치기간은 한 번에 2개월씩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최장 6개월이 된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 또는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보호명령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alking Protection Order(2019)
3. Duration of orders
(1) A stalking protection order has effect -
(a) for a fixed period specified in the order, or
(b) until a further order.
(2) Where a fixed period is specified it must be a period of at least 2 years beginning with the day in which the order is made.
(3) Different periods may be specified in relation to different prohibitions or requirements.

같은 법 제19조는 유죄판결 이후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보호명령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도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5조의2¹⁰⁾는 피해자 등의 청

10)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구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피해자 등의 청구 또는 판사의 직권으로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청구 등으로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가능한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라는 표제로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증인신분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라는 표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도 위와 같은 특례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6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28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9조는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31조는 ‘심리의 비공개’, 제33조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이라는 표제로 형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도 위와 같은 특례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불이행 범죄를 국선 변호사 배정 대상 범죄로 설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국선 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피고인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형사 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 가급적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피해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피고인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임이 형사판결 등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법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토론

1

여가부폐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과 국회·정부의 역할 요구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간사)

1.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 전개 상황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유승민, 하태경 후보가 선거 유세 활동을 전개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20대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입장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의 근거는 1)여가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2)기득권 여성만을 보호하고 있고, 3)지난 10년간 증가한 젠더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것은 2022년 1월 6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며, 이전에 언급했던 여성가족부 개편과 달리 폐지를 공약으로 공식화 한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의 태도는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2030세대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었고 윤석열 후보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로 성차별 현실을 묵과하였다.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정부를 구성하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주저한다는 비판을 받아 2022년 5월 6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제출하여 지지율 저하를 막고자 하였다. 권성동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으로 성평등, 여성에 관한 사무는 제외되었다.

가장 최근 문제가 된 것은 10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여 여성가족부 업무를 이관하고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며, 이에 성평등 부처를 전담하는 장관직이 사라지고 본부장직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 한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여성가족부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추진을 위해 1998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2001년 여성부로 바뀌었다가, 2005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가정기본법이 이관되어 성차별과 여성업무 중심에서 보육과 가족업무까지 확대되었으며,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청소년 업무가 이관되어 청소년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개선을 목표로 설치된 8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이 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2005년 성별영향평가와 2009년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2011년에는 독립된 「성별영향평가법」을 제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성주류화 정책 간 상호 연결에 대한 근거 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존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볼 때 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국가기구로서 성주류화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성주류화 제도를 구축하면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의 법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제도와 현실 간의 격차가 크며 실행할 권한이 약하기 때문이다. 성평등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추진 기구의 권한강화를 포함하여 재정 확대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전 부처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의 설치, 기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3. 당면한 성평등 과제¹¹⁾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는 다양한 성평등 문제, 구체적으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평등 문제는 여러 복합적 이슈들이 교차되며, 사회 안에서 문화·인식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이해와 연계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태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과 성평등 문제는 각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1) 성평등한 노동환경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31.5%로 OECD 주요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크며, 2020년 기준 여성의 평균 월 임금은 205만 7천원, 중위소득은 189만 2천원, 남성 평균 월 임금은 318만원, 중위소득은 279만 7천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상장법인 성별 임금 격차는 35.9%,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27.8%이며, 2018~2020년까지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2021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으로는 2,486개사가 선정되었다. 성별임금격차는 성평등 임금 정책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30% 이상의 큰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한국의 유리천장지수는 2022년 기준 10년째 최하위이며, 성별임금격차(29/29), 여성임원 비율(29/29), 여성관리자비율(28/29)로 평가되었다. 2022년 8월 5일부터 자산 총액 2조 이상 기업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는 법안이 도입되었으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년 기준 상장법인 2,246개의 전체 임원 32,005명 중 여성은 5.2%, 2조 이상 기업 152개의 전체임원 8,677명 중 여성은 5.7%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사회 속에서 여성이 극심한 구조적 성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021년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금 차별은 72.2%였다. 즉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별임금격차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증가한 돌봄 일자리 근로 환경, 2008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 관련한 일가정양립 정책 확대 등의 이슈들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성평등 노동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11) 한국YWCA연합회에서 작성한 「한국YWCA 제20대 대선 의제 제안」 참고하여 작성

2)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및 처벌범위 확대 등 젠더폭력 처벌공백 해소를 위한 법제정비가 이루어졌고, 스토킹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등 기초적인 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나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들은 굉장히 취약한 보호시스템 속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스토킹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 중심의 감시체계 확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또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에야 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비동의간음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오랫동안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 성평등한 관점에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 지방자치단체, 공군, 해군, 육군 등에서 유사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 반복해서 발생하고 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처리가 미흡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도 미흡한 상황이다.

3) 성평등·폭력예방 교육

다양해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명확한 개념 확립과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활용도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스쿨 미투, n번방 등 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성범죄가 증가하고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교육부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왔지만 잦은 인사교체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성평등 관점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내 불법 촬영 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책, 교사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교육부 차원의 성범죄 교원 처벌은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피해학생의 보호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많다.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

국제사회는 유엔(UN)을 중심으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등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북경선언에서 이행하기로 가결한 행동강령의 내용에는 여성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기구나 정부기구를 설립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률, 공공정

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성 관점을 통합하고 기획 및 평가를 위한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는데,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국내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보면 세계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처럼 독립부처형으로는 160개국에 설치되어 있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엔은 2010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전담기구는 서비스 제공자이기보다는 지식의 원천으로 정부 각 부처를 위한 전문지식과 정책 분석가로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정책과 전략에 성평등 적용을 평가해야 하고, 정책 지침을 제공하고, 부처와 정부 기구에 조언을 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정책 수립을 도와야 한다”(E/CN.6/2010/CRP.11)고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2021년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합의문에서는 성인지적 제도 개혁 강화를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제도적 구조와 실행에 있어 변혁적인 접근과 변화를 위한 행동을 재차 요구하며, “국가기구는 성평등 증진의 주요 촉진자이다. 회원국은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있어 ① 성평등 전담 기구 강화 ② 성주류화 정책 증진과 성평등 발전 ③ 젠더 통계의 수집, 배포, 활용을 위한 노력의 배가 등 3가지 활동을 추진한다”(E/CN.6/2021/L.3)는 내용을 반복하였다.

4. 국회/정부의 역할

국회와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분명하다. 헌법에 따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평등 전담 기구의 폐지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사고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이며, 한국 인구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위에서 다루었던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성차별 및 성폭력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안하무인식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겪는 구조적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인지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가족부로는 부족하며 더 강화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화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전담부처가 모든 부처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동등한 위치를 가져야 하며 수행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성평등 관련 내용은 전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전개할 때 성평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화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 관련하여 업무를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국정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입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국회는 여러 지표가 말해주듯이 한국 여성들의 현실은 국제적인 평등 기준에 훨씬 미달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더 나은 사회로 개선해 나가려는 방향성과 계획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하며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처를 확대하며 예산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5.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풀뿌리 조직들의 참여, 즉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현장의 이슈와 목소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채 업무를 수행한 것은 거버넌스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의 사업 확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인데, 이 또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여성시민사회단체도 공감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향후에는 여성가족부의 강화와 함께 영역별로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거버넌스가 구축될 때 본래의 목적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더 효과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와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향후 시민사회와 풀뿌리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 마련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토론

2

공공기관 등 직장 내 성폭력과 여성 노동권 실태

김세정 (직장갑질119,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이지만, 직장 내 성폭력 대응·피해자 보호 조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누군가가 숨질 때에야 여성에 대한 폭력이 드러나고 회자 되는 현실이 매우 아프고 슬프다. 이번 토론회가 스토킹을 포함한 직장 내 성폭력 전반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의 역할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토론문은 직장갑질119 분석 및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직장 내 젠더폭력 현황을 검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한계와 원인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공공부문 직장 내 젠더폭력 발생 현황: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장갑질119가 발표·발간한 직장 내 젠더폭력 사례 분석 자료와 공공부문 갑질 및 갑질근절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현황’을 검토한다.

(1) 직장 내 젠더폭력 발생 현황

직장갑질119는 2022년 9월 ‘직장 상사 스토킹 제보 및 젠더폭력 신고센터’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 내 젠더폭력 제보 사례를 분석·소개하였다.¹²⁾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접수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성희롱을 제외한 젠더폭력 관련 제보는 총 51건이었다. 그 유형을 보면 스토킹이 11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강압적 구애(8건), 고백 거절 보복(7건), 악의적 추문(7건)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 외모 통제, 짝짓기, 사생활 간섭 등이 있었다. 제보 사례들은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해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폭언·폭행·사생활 침해·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동반하는 특징을 보였다.

12) 직장갑질119 보도자료, “직장 상사 스토킹 제보 및 젠더폭력 신고센터”, 2022. 9. 21.

구분	스토킹	강압적 구애	고백 거절 보복	불법 촬영	악의적 추문	외모 통제	짜짓기	사생활 간섭	기타	계
건수	11	8	7	4	7	6	4	3	1	51
비율%	21.6	15.7	13.7	7.8	13.7	11.8	7.8	5.9	2.0	100.0

직장갑질119가 소개한 스토킹 사례는 아래와 같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주로 상사이거나 나이가 많은 등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무시한 채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 요구를 이어간다.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우위 관계에 기속 되어야 하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스토킹 범죄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상사의 집착으로 악몽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남자 동료를 괴롭히고, 승진을 누락시켰습니다. 출퇴근 길에 저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완곡하게 거절했는데도 괜찮다면서 강제로 태웠습니다. 불편하다고 했는데도 출퇴근 길에 전화나 카톡을 보내고 저를 기다립니다.

[사례] 열 살 넘게 차이가 나는 남자 직원이 퇴근 후, 새벽, 주말, 휴일 등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카톡을 거의 매일 보냅니다. 근무시간 외에 받는 카톡이 불편하다고 답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보냅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 저녁에 뭐하냐 등 집요하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 직장 상사가 카톡으로 계속해서 말을 걸고, 저녁을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는 본인 연구실로 불러서 원치 않는 사적인 대화를 합니다. 저는 남친이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연락을 계속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좋아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제보 사례 중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고백 거절 보복’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직장 내 우위에 있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절에 대응하여 폭언이나 협박은 물론 업무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행한다. 직장 내 젠더폭력 발생 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곧 직장 내 젠더폭력에 관한 1차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사례] 회사 대표의 교제 강요를 거절했는데 폭언, 협박, 성추행 등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강요하고, 집으로 찾아와 전화를 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고 합니다. 싫다고 했더니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배제하고 따돌렸습니다.

[사례] 상사가 사적인 연락을 해서 부서 이동과 연봉 인상을 약속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저에게 후회하게 될 거다, 결국 나를 만나게 될 거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2) 공공부문 갑질 및 갑질근절 조치 현황

정부는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역지자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직장갑질119는 2021년 7월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대책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접수된 상담·제보 사례를 분석하여 ‘광역 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22년 7월 공공분야 갑질 제보 사례를 전수 분석한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통계 및 사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국회토론회 ‘공공분야 갑질근절과 지방정부의 과제’를 개최하였다.

위 보고서들과 토론회 자료를 통해 파악한 공공분야 갑질 현황 중 주목할만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0~2021년 17개 광역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270건으로 연평균 135건이었다. 이는 광역지자체 본청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5% 수준이다. 신고 건수와 공무원 인원 대비 비율을 단순 비교하여 평가할 수는 없지만,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¹³⁾

②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조례 제정과 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진 지자체는 6곳뿐이다. 정부 종합대책은 기관 자체적으로 기존 갑질유발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하였으나, 종합대책 발표 후 4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은 광역지자체 비율이 23.5%였고, 조례에 더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지침·매뉴얼까지 제정한 곳은 6곳에 불과하다.

③ 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공공분야 직장 내 괴롭힘 이메일 제보 중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618건을 분석한 결과(2018. 7. ~ 2022. 5.), 사내 신고 또는 외부신고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가 60.5%(374건)로 10명 중 6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조치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47.8%(100건),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가 30.1%(63건), 조치의무 미이행과 불리한 처우 모두 당한 사례가 22.5%(47건)에 달하였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폐쇄적인 공공분야의 특성상 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3) 소결

정리하면, △ 직장 내 성희롱을 제외한 직장 내 젠더폭력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스토킹

13) 덧붙여 직장갑질119가 2021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7. ~ 2020. 12.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전체 응답자의 34.1%였고,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7,953건이었고 증가세를 나타냈다. 광역지자체 신고 건수를 보았을 때,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다. △ 일상을 공유하고 우위에 기속되어야 하는 직장 특성상 스토킹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며, △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도 매우 높다. △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신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 자체가 미비하여, △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주의 조치의무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즉 일터라는 특수성이 스토킹 등 젠더폭력을 조장하고 심화하지만,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은 물론 신고조차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공공부문 직장 내 젠더폭력의 현황이다.

2.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한계와 원인

앞서 서술한 공공부문 직장 내 젠더폭력 현황과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으로부터 현재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한계점과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1) 남성중심적, 위계적·수직적 조직문화와 낮은 성인지 감수성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0년 서울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현황’ (2022. 3.)에 따르면, 서울 본청을 포함한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성별임금격차 상위 기관 3곳은 서울시립대, 서울관광재단, 서울교통공사였다. 각 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관명	총인원	여성비중	평균근속기간(월)		성별임금격차 (증위값)
			남성	여성	
서울시립대	700	36.3	147.3	60.5	54.99
서울관광재단	117	69.2	83.4	54.3	47.98
서울교통공사	16,452	10.3	232.0	158.4	35.71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사유를 명시했다.

△ 서울시립대의 경우 고임금을 받는 전임 교원 중 여성비율이 13.9%(55명)로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 평균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짧은 것이 원인이었다.

△ 서울관광재단의 경우 2020년 공시대상 직원 64%가 2년 이하 직원이고 블라인드 채용으로 여성 신입 사원 입사가 78%로 월등히 높아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근속연수 2년 미만 14.92%, 10년 ~ 20년 미만 11.46%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근속연수가 짧은 여성 신입사원이 많기 때문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한편 직급별 여성 비율은 4급까지는 절반 이상이지만, 3급에서 41.7%로 감소하고 1급에서는 0%가 된다.

△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의 차이가 18년 8개월로 매우 높다는 것과 야간 및 휴일 근무자 비율이 남성 75%, 여성 26%이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5급 이상 여성 비율은 현저히 떨어졌고(6급 21.9%, 1급~5급 평균 6.28%), 기간제업무직 여성 비율은 38.3%였다.

성별임금격차는 성별 직무 분리, 고용형태 차별, 성별에 따른 근속기간의 차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상실 등 때문에 발생한다. 성별임금격차 현황으로부터 공공기관 조직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공공기관 대부분이 남성이 조직 전반에서 절대다수이거나 높은 직급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중심적 조직이다. 세대와 근속연수 격차도 상당하고, 명확한 직급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위계적·수직적 조직이다. 더불어 2016년 서울메트로, 2017년 한국가스안전공사, 2018년 KB국민은행, 2021년 동아제약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채용 성차별이 개선은커녕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에서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회사가 제대로 된 대응 및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피해 노동자 역시 서울교통공사에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지 못했다.

(2) 사업주(사용자)의 소극적 대처

우리나라 법체계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문제 해결 전반의 주체를 사업주 또는 사용자, 즉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에 관한 최우선 책임은 바로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사용자에게는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말 그대로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 신체 등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법에서 강제하는 사업주의 조치의무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설명한 직장갑질119 제보사례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공공분야 종사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 노동자가 회사에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사업주의 조치의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까지 한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소극적인 대처가 주요한 빌미를 제공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이 기소되자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는데, 맥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가해자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리조치의 목적은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통한 원활한 업무 복귀이므로, 분리조치를 했더라도 가해자가 접근할 수 있거나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불법촬영이라는 혐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소속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 내부 전산망 차단은 물론 물리적인 접근 자체를 제한했어야 마땅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회사에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 내지는 확정되지 않아 다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많은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사건 결과가 나온 후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소속 노동자에 대한 ‘징계’와 형법상 범죄의 ‘처벌’은 완전히 별개로,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다루어져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사규정」 제52조에 징계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가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9년을 구형받을 정도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52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1. 제규정에 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2.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4.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관련 법 제도 미비: 직장 내 스토킹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2. 8.)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여성 7,000명 중 평생 동안 스토킹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이 2.5%이고 그 중 가해자가 ‘학교나 직장 구성원’인 경우는 14.1%, ‘업무상 접하는 사람(거래처, 고객 등)’은 6.8%(중복응답)였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정의는 친밀한 관계 또는 불특정 다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때문에 직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업무적 관계’가 있는 자들, 예컨대 고용주, 상급자, 동료, 고객으로부터의 스토킹에 있어 회사의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현행법상 응급조치 의무 일부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제출자료 ‘직장 내 스토킹 범죄 현황’ (2022. 9. 25.)¹⁴⁾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직장 내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이들은 총 69명이었다. 이 중 사용자 등 고용관계는 9명(23.2%), 직장동료는 60명(76.8%)이었다.

구분	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고용관계	직장동료
2021년	11명	4명	7명

14) 구체적인 수치는 매우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99호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2022. 10. 12.)에서도 경찰청 제출자료 「직장 내 스토킹 현황」(2022. 9. 29.)이 제시되어 있다.

2022년 6월	58명	5명	53명
합계	69명	9명	60명

특이한 점은 고용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 건수는 4명에서 5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직장동료인 가해자에 대한 기소 건수는 7명에서 53명으로 크게 증가한 부분이다. 즉 고용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기소율이 유독 낮다는 것이다. 이는 스톡킹처벌법이 스톡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직장 내 권력 관계로 인하여 가해자는 우위를 이용해 합의를 중용하고 피해자는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마치며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 이라는 것이 있다. ‘1:29:300의 법칙’ 이라고도 한다. 어떤 대형 사고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도 마찬가지다.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업무를 하는 도중 젠더 폭력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서울교통공사에는 수십 차례의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한 결과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여성 노동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니 여성을 치워버리면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 대책은 머지않아 당직도 못 하는 여성을 왜 뽑느냐, 여성은 편하게 산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어 여성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고, 승진을 가로막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관해 온 서울교통공사, 입법부, 사법부, 정부, 나아가 사회 전체가 만든 사고이다. 일터가 안전하지 않으면 삶도 안전할 수 없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직장 내 젠더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는 물론, 일터 자체와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토론

3

1인 여성 노동자의 안전권

김운속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 분회장)

1. 들어가며

신당역 여성살해가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이유는 동시대를 여성노동자로서 살아가며 노동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보호받지 못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2. 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의 업무 중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1) 고객들의 성희롱, 성추행

현장노동자로서 예약 없이 가가호호방문하고, 예측할 수 없이 홀로 위험한 사안에 맞닥뜨려야하는 상황들이 많다. 알몸으로 문을 열어준다거나, 우울증환자의 칼로위협, 음란물 동영상 틀어놓고 점검 업무하는 나를 찬찬히 보는 것, 문을 반쯤 열어놓고 스쳐지나가야하는 상황, 껴안거나 말로 희롱하는 것, 개물림 사고도 있다.

(2) 홀로 일하다가 다치게 되는 일들

계단에서 구름, 담장오르기, 사다리타고 계량기를 보다 실족, 추락(뇌사상태치료 사망, 무릎인대파열, 찰과상, 타박상, 뇌진탕등)

(3)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노출

업무폰이 있으나 알려진 개인폰으로 연락음, 회사에 블랙리스트 자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법위반이라 못 만들다고함.

3. 2인1조와 노동기본권의 보장

(1)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2인 1조 제안했으나 거부당함

-시민들의 가스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렵다

(2) 안전업무이고 공공성이 있는 업무인데도 비정규직

-서울시 임금도 중간에 떼이는 현실

21년도 산정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2년도 임금도 삭감된 산정자료가 나온 상태이다.

(3) 여성노동자에 대한 남성관리자들의 무시

-부당한 정직

중징계 100일 -2020년도 시행된 검침규정 격월검침을 시행한 것과 코로나 시국 점검요청세대만 방문 실적저조가 중징계인 정직 10일-100일 내려져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폰 성추행 사진을 보내왔는데, 실수로 보낸 것같으니 점검가라

-격월검침 시행 못한다 현장에서 쓰러지면 전화해라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더니 자기관리 못해서 그런 거다 시원할 때 일해라

4. 결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 정부가 여성노동자가 겪는 차별과 성폭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토론

4

대학 내 성폭력 및 강간문화 실태고발
-삶이 더는 우연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

지난 몇 달 간 여성들이 죽어갔다. 7월 15일 인하대학교에서는 학내 성폭력사건이, 9월 14일에는 신당역에서 가해자 정주환이 순찰을 하던 피해자를 쫓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었다. 나 또한 술에 취해 학내를 걸어간 적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나의 이름일지도 내 친구의 이름일지도 몰랐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왜, 어떻게 살아있는가? 우연으로 살아남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에 더는 멈춰있을 수 없었다. 하나의 끝나버린 삶에 수많은 이름들이 가득한 죽음의 굴레 속에서 나는 우리를 살리고 싶었다.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가.

대학 내 성폭력 문제는 과연 인하대만의 문제인가.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학 내 성폭력 신고 건수는 348건으로, 당해까지 5년간 총 1206건의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비대면 캠퍼스 전 마지막 해인 2019년은 346건으로 2016년 대비 2배 높은 신고 건수가 접수되었다. 모든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신고된다고 볼 수 없고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실제 언론에서는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대면수업이 재개되면서 최근 대학 내 성범죄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연세대에서는 7월 4일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의대생이 경찰에 구속되었고, 지난 4월에는 경기도 모 대학교 여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당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 해도, 2019년 학내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그때의 나는 1학년이었고 처음으로 접했던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과 학교의 안 곳곳에서 대자보를 목격했었다. 한 신입생을 학생회장이 성폭행했던 사건으로 잠깐 학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모른 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서 쓴 대자보를 보고 에브리타임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말에 중립을 유지하던 이들이 그 가해자의 말에 동요되었다. 어느샌가, 피해자는 그럴 일을 당할 만한 부주의한 여성으로 낙인찍혔고 그렇게 처벌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자퇴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술에 취해 대학교 안을 걸어다니거나, 학교에서 만난 인연들과 술을 마시거나, 교수님과 면담을 했을 것이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서 성범죄는 매년 늘어났고, 학교를 안전하다 여겼던 통념

에는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어디에도 여성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허점이 존재하였다.

급증하는 학내 범죄의 원인

경남대학교의 재학생이자 행동하는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즘 동아리의 회장으로 그간 학내나 다른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었다. 당장 나의 친구에게 벌어진 일일 수도, 혹은 이름도 모를 누군가에게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겪었을 법한 사건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학내에서는 성범죄가 급증하는 것인가.

첫 번째,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대학 내 성범죄가 결국 사회 전반의 왜곡된 성 의식과 맞닿아있다고 보았다. 교육부의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는 음담패설과 일명 ‘섹드립’ 이 장난처럼 소비되는 대학 문화에서 학생들이 성폭력에 점점 둔감해진다는 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겪었던 학내 문화도 마찬가지였다. 내 사례를 들어보자면 신입생 때 어느 술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내 앞에 앉아 말을 걸었다. 그 남학생은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위계감과 두려움이 들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선배는 그런 나의 가슴을 뻘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도 잊을 수 없었지만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나의 뒤에 있던 자신의 친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행위였다. 그들이 주고받았던 시선, 웃음은 나를 사이에 두었지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매대 위에서 잠깐의 흥미로 인해 만져지는 장난감처럼 물화되었다.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간 한국 사회의 현저히 낮은 사회 인식이 성희롱을 당연한 듯 용인해주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교의 성교육 또한 문제이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성인이다. 금기시되었던 성에 제한이 풀리자 다양한 매체를 통해 흔히 말하는 음지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공교육에서 멀어졌다. 2020년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의 과반수 이상이 학생으로 나타났다. 낮음에도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참여율은 49.7%로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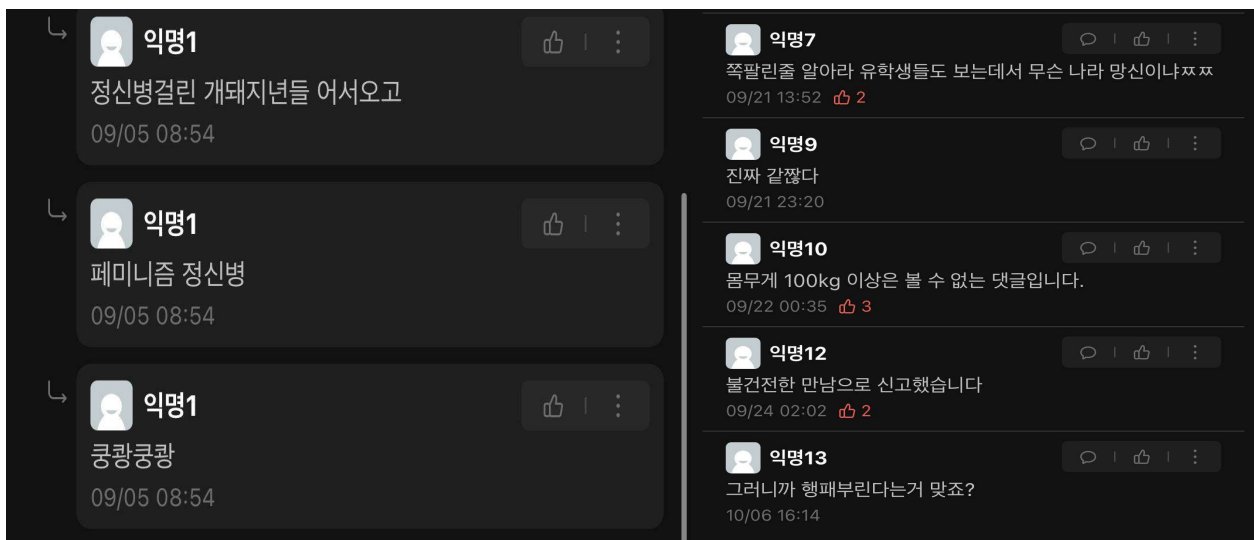
세 번째, 끊임없는 학내 성평등 담당 기구 탄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있다. 총여학생회는 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학교에 처음 생긴 이래 1990년대까지 다수의 대학에 만들어졌었다. 이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낮고 대학 문화를 남학생들이 주도하던 시절 여학생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역할도 맡았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점차 여론이 확산되자 전국적으로 총여학생회는 잇따라 폐지되었다. 학내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는 여론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했다. 여전히 학생간 성폭력은 물론이고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또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A라는 교수가 취업을 빌미로 학생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단지이에 관련해 단 하나의 기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누구도 정확히 대응하려 하지 않았으며, 침묵 속에서 피해자는 잠식되어 갔다. 당시에 페미니즘 동아리의 회장이었기 때문에 피켓을 만들고 정문에서 릴레이 1인 피켓팅을 하거나 학교 내에 공명정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었다. 누군가는 우리의 활동에 무슨 자격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시끄럽게 만드냐고 말하기도 한다. 애초에 학내 성폭력은 대학 내 사제 간, 선후배 간, 동급생 간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이는 관계 내 존재하는 위

계와 힘의 영향력 또는 친밀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 학내 주체로서 성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기구였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고 오랜 기간 피해자는 점점 말할 곳을 잃어갔었다. 2017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났던 페미니즘 동아리의 꼬리표 또한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다. 겨우 학내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는 이번 3월부터 생겨난 학내 인권센터인데 국내 대학 10곳 중 8곳이 성 문제 및 상담 관련 지식이 전문한 교수를 센터장에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어떻게 학내 성폭력에 대응할 것인가

이대로는 학내 성폭력을 막아내기는커녕,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학내 사회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학내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추지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대학 내 젠더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학 교육은 단순히 ‘성폭력하면 안 된다’는 1차원적 수준을 넘어서 젠더를 둘러싼 일상의 편향과 지식의 남성 중심성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브리타임에서만 보아도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페미니즘 동아리라면 무조건적으로 비난, 욕설, 인신공격을 일삼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의 인식은 그간 차별적이었던 한국 사회의 성인식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두 번째, 기술적인 안전 대책에서 더 나아가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하대학교 사건 이후 많은 학교에서 비상벨을 확대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부차적인 대책일 뿐, 학내 성폭력을 막겠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당장에 학내 성폭력은 CCTV가 없어서, 혹은 비상벨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학내에서 학생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다수인 학내 성폭력 문제에서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그 어느 기구도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은 성인이지만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자, 등록금을 내는 소비자이며, 학교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 학생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학내 주체들이 설 자리가 없으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학내 주체들이 대표할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를 올바르게 세우고, 대학 인권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학내 주체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대학 인권센터에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입법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논문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에서 인권센터에 총학생회나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대표기구에서 동의하거나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면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면 학교 내 보직을 맡은 교수가 아니니 학교의 위상을 고려한 결정을 하기보다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학내 성폭력 처벌 강화이다. 학내 성폭력은 각 대학별로 처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 처벌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교 또한 제대로 된 매뉴얼을 소개해 주지도 않는다.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받을 제재가 어떤 것인지, 관련 규정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땀질식 처벌을 한다고 해서 학내 성폭력이 해결되지 않는다. 학내 성폭력을 대하는 미온적 태도를 점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엄벌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각 대학에서부터 학교의 위상만을 생각하고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아야 한다. 아직도 가해 사실을 숨기고 수사 절차를 밝히지 않으려하며 수사 결과도 숨기는 학교들이 있는데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임을 대학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죽음은 아리따운 꽃이 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를 사랑할 권리를, 그에게는 살아갈 권리를 박탈한 일이다. 수많은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그간 정당한 권리들을 빼앗겨 왔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0년 1년 112 관련 신고량이 4515건에서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신고량은 2만 623건으로 시행 저년도 1년 신고량이 다섯 배에 달하고 있다. 대다수의 스토킹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여성으로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학 내 성폭력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이를 직시할 때 비로소 허울뿐인 해결책이 아닌 보다 더 나은 대안들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한 사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하지 못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안전에는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성별이든, 어떤 옷을 입든, 술에 취하든 그들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자격만이 존재할 뿐이다.

요구안
전달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와 관련된 우리의 요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1.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라.

한국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79.5%가 여성(경찰청 통계)이며, 해외에서도 여성의 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남성
에 비하여 2~3배 높은 정도로 스토킹범죄의 젠더적 특성은 뚜렷하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는 다른 범죄와 동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심각성이 크에도 법제도는 미비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현행 법에 규정된 스토킹범죄의 정의규정을 넓히고 둘째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폐
지해야 한다. 특히 반의사불벌 규정의 가해자가 스토킹을 지속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하고, 피해자는 보복
을 우려해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셋째, 신당역 여성살해 처럼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잠
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응
급조치,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끝으로 신당역 여성살해
의 경우처럼, 중형을 구형받은 가해자가 선고 전에 피해자를 해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사의 직권 또
는 피해자의 청구 등으로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2.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확대하라.

성별에 따라 경험하는 산재의 유형은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여전히 업무상 재해는 남성중심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도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구조적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직장 내 성희롱, 불법촬영, 성추행, 스토킹은 여전히 많고, 이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 훼손은 심각하다.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직장 내 성폭력에 따른 산재신청은 23건이며, 21건
을 산재로 인정했다. 공단의 산재인정률은 높지만 문제는 직장 내 성폭력 신고 건수에 비해 산재신청이 매
우 적다는 것이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많은 현실과 성폭력 근절이 여성노동자
의 안전권 보장이라는 인식이 적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당역 여성노동자 사망사건
에 대한 산재 인정과 이에 대한 보상 외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인력 확보, 성차별적 공사 운영 개선, 성폭
력 예방교육 실질화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근거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해

야 한다.

3.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여 젠더폭력 예방 기능 강화하라.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직장내 성폭력 대응매뉴얼이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고, 많은 직장에서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한 처벌 등의 기준이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성폭력임에도 서울교통공사 내 성폭력 기관에 신고할 수 없었고 휘슬블로어 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익명제보시스템도 이용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의 성차별적 문화로 인해 직장 내 성폭력 기구를 안심하고 믿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만 고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가해자를 옹호하는 2차 피해가 직장내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모든 직장내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 해결 및 피해자 보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폭력 대응을 실질화하여 젠더폭력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에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공공기관의 성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이 법의 주무부처다.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에서 비롯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여성혐오에 기반 하기에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고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광범위한 현장 점검이나 재발방지 대책 지시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까지 발표했다. 젠더폭력예방교육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폐지는 성 평등한 일터문화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삭제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직장 내 성폭력을 방지하고 확산하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5.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하라.

직장 내 성폭력, 여성 살해는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광범위한 구조적 성차별에 근거한다. 여성가족부의 본질적 기능은 구조화된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고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쪼개어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기조를 유지하는 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도, 젠더폭력도, 가정과 학교, 거리에서 벌어지는 여성 살해도 막을 수 없다. 성평등한 제도와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서 전 부처 차원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성평등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성평등 전담부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